## KOSHA GUIDE

C - 96 - 2014

- (가)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경우
- (나) 현장조건 상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(다) 현장조건 상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을 시공할 수 없는 경우
- (라) 현장조건 상 무너짐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구조물 의 설계를 누락한 경우
- (2) 재해발생 위험의 사전검토 결과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,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는 "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" 또는 전문가 1인 이상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한다.
- (3) 전문가의 자격조건은 대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과 국가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하며, 자격조건별 검토할 수 있는 가 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(가) 건축구조기술사 : 5.1 (1) (가) ~ (다) 및 (바) (단, 토목공사는 제외)
  - (나) 토목구조기술사 : 5.1 (1) (가) ~ (바) (단, 토목공사로 한정)
  - (다) 토질 및 기초기술사 : 5.1 (1) (라) 및 (마)의 구조물로 한정
  - (라) 건설기계기술사 : 5.1 (1) (바)의 구조물로 한정
- (4)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판단은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의견서 등을 근거로 한다.
- (5) 불안전한 구조라고 우려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설계 서에 명기된 가설구조물의 재료·치수·배치간격 등을 사용하여 현장조건의 하중 및 작업 상태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- (6) 전문가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## 6.2 설계변경 요청·숭인 절차

(1) 수급인은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을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와 개략공사비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문